

의안번호	2212685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9.22.
추계번호	25C48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2조원(연평균 7.0조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항)	7.5	7.3	7.0	6.8	6.6	35.2	7.0
－ 국비	5.7	5.6	5.3	5.2	5.0	26.9	5.3
－ 지방비	1.8	1.7	1.7	1.6	1.6	8.3	1.7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¹⁾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²⁾ 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³⁾ 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1항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
2	안 제4조제6항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X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별도의 추가 지원(안 제4조제6항)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액 등에 대하여 추정이 곤란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표 2] 만 0~12세 아동 수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1세	216,540	216,413	227,121	237,221	246,446
2세	228,264	216,576	216,460	227,149	237,220
3세	243,386	228,286	216,626	216,522	227,200
4세	257,800	243,177	228,108	216,474	216,382
5세	272,427	257,384	242,792	227,754	216,148
6세	291,972	272,005	256,994	242,429	227,418
7세	318,501	291,693	271,762	256,778	242,234
8세	345,655	318,279	291,511	271,613	256,655
9세	382,903	345,387	318,058	291,330	271,466
10세	426,157	382,531	345,080	317,803	291,118
11세	438,270	426,073	382,485	345,064	317,808
12세	430,991	438,590	426,396	382,807	345,379
합 계	4,069,945	3,864,227	3,661,389	3,480,223	3,350,880

주: 「장래인구추계」(2023.12.) 중위시나리오
자료: 통계청

- 현행 아동수당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⁴⁾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7.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수당(안 제4조제1항)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증가분임

- 지급 대상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높이고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3세 미만 아동 수와 월 20만원의 지급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총 46.6조원(연평균 9.3조원)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급 대상자 수(명, A)	4,070	3,864	3,661	3,480	3,351	—	—
월 지급액(만원, B)	20.4	20.8	21.2	21.6	22.0	—	—
지원개월 수(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D)	99.6	99.6	99.6	99.6	99.6	—	—
합 계(조원, E=A×B×C×D)	9.9	9.6	9.3	9.0	8.8	46.6	9.3
— 국비	7.6	7.3	7.1	6.9	6.7	35.6	7.1
— 지방비	2.3	2.3	2.2	2.1	2.1	11.0	2.2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5년간 총 11.4조원으로 추계

[표 4]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급 대상자 수(명, A)	2,046	1,953	1,898	1,872	1,868	—	—
월 지급액(만원, B)	10	10	10	10	10	—	—
지원개월 수(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D)	99.6	99.6	99.6	99.6	99.6	—	—
합 계(조원, E=A×B×C×D)	2.4	2.3	2.3	2.2	2.2	11.4	2.3
— 국비	1.8	1.8	1.8	1.7	1.7	8.7	1.7
— 지방비	0.6	0.5	0.5	0.5	0.5	2.7	0.5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2조원(연평균 7.0조원)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9.9	9.6	9.3	9.0	8.8	46.6	9.3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4	2.3	2.3	2.2	2.2	11.4	2.3
추가재정소요(C=A-B)	7.5	7.3	7.0	6.8	6.6	35.2	7.0
— 국비	5.7	5.6	5.3	5.2	5.0	26.9	5.3
— 지방비	1.8	1.7	1.7	1.6	1.6	8.3	1.7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